

대구지방법원 2023. 8. 17 선고 2022나329100 판결 [계약금 반환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

담당변호사 이윤선

변 론 종 결 2023. 7. 13.

판 결 선 고 2023. 8. 17.

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. 10. 26. 선고 2022가소315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4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는, 피고와 사이에 측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,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금 1,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살피건대, 갑 제1, 3호증,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19. 4. 11. 피고와 사이에, 피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외 5필지 토지 지상의 측사 신축과 관련한 설계용역을 계약금 2,4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고, 도급금액 중 1,000만 원은 계약시, 700만 원은 설계도서 제출시, 500만 원은 건축허가시, 200만 원은 준공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사실, 원고는 피고에게 2019. 4. 11. 1,000만 원, 2019. 4. 22. 7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, 피고는 2019. 4.경 측사 신축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, 의성군수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설계도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설계도서 제출시 지급받기로 한 도급금액 1,700만 원(1,000만 원 + 700만 원)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, 달리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도급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2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서은, 판사 김정일, 판사 손윤경